

의안번호	제 10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현재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존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8조)
- 종전의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문해교육 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평생교육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사업 변경(안 제15조)
-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등 포상 근거 마련(안 제1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문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7.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 홍보 및 문해 행사 개최
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중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3. 문해교육사업 운영
4.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2조(설치) ----- ----- ----- ----- 수 립·시행 등----- ----- ----- -----.</p> <p>제6조(수당 등) ----- ----- ---- 범위에서 ----- ----- ----- ----- -----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p> <p>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p>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해 지정받은 기관·단체 등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진흥원은 법 제20조 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북도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
3.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4.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5.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10조(지정 운영) ① 제8조제1항

에 따른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와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운영자가 협약서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 지정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
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진흥원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
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장은 사업연도마다 결
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
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결
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진흥원장에
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진
흥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4조(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문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7.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 홍보 및 문해 행사 개최
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소요

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도민의 평생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
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 설>

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와의 협력관계 강화
3. 문해교육사업 운영
4.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삭 제>

제16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
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취

□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

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과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의 통합에 따라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비용 발생 요인

-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포상금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16조(포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무 이관에 따라 세출 감소 : △3,927,410천원
- 포상금 : 2,500천원

나. 추계 결과

- 세출감소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연간 △785,482천원(5년간 △3,927,410천원)
- 세출증가 : 포상금 연간 500천원(5년간 2,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 입							
세 출		△785,482	△785,482	△785,482	△785,482	△785,482	△3,927,410
평생교육진흥원운영		△785,982	△785,982	△785,982	△785,982	△785,982	△3,929,910
포상금		500	500	500	500	500	2,500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조 병 철